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49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4657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4953 판결

전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신정민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황규민

변론 종결 2023. 7. 17.

판결 선고 2023.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D에게 의정부시 E 대 1098㎡ 중 1/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의정부시 E 대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0. 12. 17. 신축(사용승인)된 2동의 공동주택(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그 중 G동은 12세대(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H동은 10세대(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집합건물 I호에 관하여 2021. 6. 10.(2021. 6. 4.자 매매), 원고 B은 J호에 관하여 2010. 3. 11.(2010. 3. 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집합건물 I호, J호의 소유권 변동경위는 아래와 같다.

1	1979. 10. 25.	1979. 10. 10. 공유물분할	K, L, M, N, O: 각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I호] 1981. 8. 8. P 소유권보존등기 - 같은 날 Q 소유권이전등기[I호] 1981. 2. 17. R 소유권보존등기 - 1981. 6. 27. S 소유권이전등기 - 1983. 2. 2. T 소유권이전등기			
3	1990. 1. 10.	1980. 4. 20. 매매	U
[J호] 1992. 4. 16. U 소유권이전등기(1989. 9. 8. 매매) - 1992. 4. 16. V 소유권이전등기(1992. 3. 13. 매매)			
11	2005. 3. 8.	2005. 2. 7. 매매	D
12	2005. 3. 8.	2005. 3. 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W
15	2008. 3. 13.	X 등이 U, D 등을 상대로 한 소제기(의정부지방법원	3(U), 7(D)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12(W의

1	1979. 10. 25.	1979. 10. 10. 공유물분할	K, L, M, N, O: 각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007가합7772호)	가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
17	2009. 4. 17.	소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2111))	위와 같음
19	2010. 4. 8.	2009. 12. 17. 원고패소판결확정	17번 예고등기말소
[J호] 2010. 3. 11. 원고 B(2010. 3.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I호] 2010. 6. 3. D 소유권이전등기(2010. 5. 26. 매매)			
20	2010. 9. 30.	2010. 9. 30. 해제	12번 가등기말소
25	2012. 3. 29.	2012. 2. 29. 원고패소판결확정	15번 예고등기말소
49	2018. 11. 30.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Z)	채권자 AA유한회사
50	2018. 11. 30.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AB)	채권자 M
53	2019. 5. 29.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AC)	채권자 주식회사 AD
55	2021. 3. 26.	2021. 3.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피고
56	위 49, 50의 각 강제경매개시 결정, 53의 임의경매개시 결정 등 말소(그 외 여러 개의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		위와 같음
[I호] 2021. 6. 10. 원고 A(2021. 6. 4. 매매)			

2.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이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 변동경위에 의하면, U이 1990. 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J호에 관하여 1992.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J호의 소유자인 U은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2. 4. 1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1 지분만큼의 대지사용권을 가진다(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22개로 모두 벽돌조 41.69㎡, 지하실 13.72㎡로 전용면적이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1098㎡에 관하여 원고들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2/22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1)). 이후 J호를 승계취득한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1/11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U에서 D 앞으로 2005. 3. 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I호도 D이 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I호 소유자인 D은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6. 3. 이 사건 토지 중 1/11 지분만큼의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이후 I호를 승계취득한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 중 1/11지분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J호에 관하여는 1992. 4. 16.부터, I호에 관하여는 2010. 6. 3. 부터는 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U과 그 특정승계인인 D은 분리처분금지의무를 부담하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도 그와 같은 분리처분금지의무를 승계하는 특정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경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이므로, 피고는 D에게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3. 6. 13.자 준비서면에서 각 1/22 지분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다른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바 없고, 한편 2022.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22개의 면적이 모두 같음을 이유로 대지사용권을 2/22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여러 관련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및 D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U 및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소송의 결과 아래 사실은 갑 5, 6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U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하 '의정부지원'이라 한다) 89가합584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M, O, N, L, K(이하 'M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U이 1980. 4. 20. 위 사람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9. 11. 3. 자백간주를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U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U은 1991년경 의정부지원 90가소19095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AE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31. U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92나4313)은 1993. 6. 17. 'U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명의자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U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3다40911), 1993. 11. 9. 상고기각되었다.

한편 D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3978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1. 마쳐진 가등기 명의인인 AF, AG을 상대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여서 D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중 X, AH 등 16인은 U, D, W, M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772호로, 주위적으로, U 및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W는 2005. 3. 8.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선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M 등에 대하여는 1980. 3. 28. 매매 또는 2003. 3.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D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U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U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W의 가등기 등도 원인무효라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0. 7. 9. 'M 등(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9.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M 등 5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포함되었다)은 1980. 3. 28. A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고, AI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3,050만 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R이 A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을 하다가 자금압박으로 1980. 12. 28.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R의 채권자 중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공사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자 등 약 30인은 1981. 3. 9. F주택 채권단 청산위원회를 설립하였고, R은 위 청산위원회 회장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M 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수 잔금 지급채무를 위 청산위원회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집합건물 중 일부는 전전양수된 사실, U은 R의 채권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위 청산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하자 별도로 F주택채권단을 구성하여 그 대표자로 선출된 후 M 등에게 1982. 12. 20. 1,200만 원, 1983. 4. 1. 1,5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M 등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원 89가합584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U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 등과 AI 사이에 체결된 1980. 3. 28.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승계인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U은 F주택채권단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AI, R을 거쳐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순차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U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사건의 원고들이 U, D, W를

제외한 M 등 위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U, D 등에 대한 청구는 물론, M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인 D에 대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건의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76704)은 2011. 10. 28.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U, D, W에 대한 각 말소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M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104369), 2012. 2. 23. 상고기각되었다.

4) M, U,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1. 마쳐진 가등기 명의인인 AF, AG을 상대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23), 제1심 법원에서는 위 사람들의 무변론으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5404)은 2012. 12. 4. 'U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소송 등에서 U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효로 판단되었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M 등의 소유이고, 위 AF 등의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U, D의 청구는 기각하고, M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가등기말소 인용)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위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소송의 피고이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중 1인이었던 M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592호로 D, U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U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 1. 10.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D은 2005. 3. 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22.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M이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른 판결에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M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M 등과 U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확정판결(의정부지원 89가합5840)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가) 주장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정부지원 89가합5840)에 의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유효한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피고가 그에 대해 무효라고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의 당사자인 M 등과 U, 그리고 위 사건의 변론종결 후 각 당사자들의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U과 M 등 및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소인 위 확정판결은 'U은 이 사건 토지를 M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U 또는 D이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 이와 같이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은 물론, 다른 관련소송에의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도 원고들과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관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지 않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I호 및 J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가진다는 주장의 전제인 U 및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 취득 유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등 각 참조), 특히 전후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거나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수의 관련소송[의정부지원 90가소19095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92나4313(대법원 93다40911),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7772 및 서울고등법원 2010나76704(대법원 2011다104369), 서울고등법원 2011나65404]에서 적법한 등기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U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직전 소유자인 M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U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사용권으로 적법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 앞으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M 등의 요구에 따라 U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쳤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U에게 채권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적 권리로도 인정될 수 있다. U은 M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고 의정부지원 89가합5840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M 등이 U에게 토지사용권한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U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적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가진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M 등과 AI 사이에 체결된 1980. 3. 28.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AI, R을 거쳐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순차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6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이 'M 등이 U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및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U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모순행위에 금지되는지 가) 주장

'피고는 U, D의 특정승계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의무 및 분리처분시 무효라는 부담을 승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인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적용받으며, U 내지 D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U,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우선 피고는 의정부지원 89가합5840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3. 3. 30.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모순행위금지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어떤 행위자의 행태가 그의 선행행위와 모순되고, 그와

같이 모순되는 후행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면 그 선행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내지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 내지 D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 내지 금반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재원

1) 1989. 8.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쳤던 Y 등(순위번호 2)이 U, D 등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소송이다.